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732 제출년월일 : 2009. 11.

제 출 자:중구청장

1. 제정이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한글 연구와 보급에 평생을 바친 외솔 최현배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후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외솔 최현배선생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념관의 범위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근거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입법예고 의견없음(2009. 9. 7 ~ 9. 28)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관의 범위 및 위치)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 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솔 생가와 기념관으로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613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 2. 기념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 3. 최현배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매주 월요일
 - 2.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 1. 술에 취한 자
-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내(기념관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2. 고성,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 3.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각종 집회 또는 사전 허가 없는 행사
 - 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기념관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 제9조(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2. 기념관의 개선·후원 및 자료취득·전시·보관 등에 관한 사항
 - 3.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전통문화와 문학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 지역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관계공무원은 기념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 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기념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4조(위원의 실비보상)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운영) ① 기념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기념 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기념관 운영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 3.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변경·증설하였을 때
- 제18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관람자 및 자료이용자가 기념관 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관계공무원 및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념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한 때에는 제1항에 준한다.
-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32)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09. 11. 11(수)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09. 11. 16(월)

라. 위원회 상정 : 2009. 11. 30(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 외솔 최현배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후세의 교육장으로 활용 하기 위해 최현배 선생의 기념관이 건립됨에 따라
- O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 하려고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기념관의 범위 및 위치(안 제2조)
- 나.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 다. 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안 제4조)
- 라. 기념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마. 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 바.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사.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5. 관련법규

O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제12조 등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홍성춘)

가. 본 조례안은

- 우리 지역 출신의 한글학자이자 교육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후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생의 기념관이 건립됨에 따라
-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등을 위해 이에따른 필요한 사 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임.
- 나.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부터 제20조 시행규칙까지 20개조문 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4조에 기념관의 업무와 기능,안 제5조부터 제8조 까지는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수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다. 이와같이

- 본 조례안은 우리고장의 자랑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으며,이에는 특별한 이견(異見)이 없음.
- 다만, 향후 기념관 인력 배치 등의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 구됨.

7. 싞사결과 : 수정가결